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

판 결

사	건	2023가합105520 손해배상(지) 등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응세, 김소연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를정
		담당변호사 노민우
변 론 종 결		2026. 4. 24.
판 결 선 고		2026. 5.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제목의 곡을 작곡하였고, 위 곡은 1997. 4.경 공표되어 가수 D이 가창하였으며, 2023. 3. 1. 한국어로 변안되어 'E'라는 제목으로 가수 F이 가창하였다(이하 D 가창의 곡을 '원고 곡'이라 한다).

나. 피고는 'G'라는 제목의 곡을 작곡하였고, 위 곡은 2010. 10. 22. 공표되어 가수 H가 가창하였으며, 2021. 10. 11. 리메이크되어 가수 I이 가창하였다(이하 가수 I 가창의 곡을 '피고 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 곡에 의거하여 피고 곡을 작성하였고, 원고 곡과 피고 곡은 아래 표 기재 각 구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원고 곡	피고 곡
A구간		
B구간		



C구간		
-----	--	--

이처럼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인 원고 곡을 그대로 표절하거나 일부 변형한 행위는 원고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피고가 피고 곡을 사단법인 J에 등록하여 매월 지급받은 저작권사용료 상당액 중 일부인 15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의 일부로 5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가 원고 곡 중 피고 곡과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는 A, B구간은 대중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공유되어 온 관용적인 표현에 불과하여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원고 곡과 피고 곡은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창작물이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하고, 여기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등 참조).

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작권법이 정한 창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원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가 상대방 저작물에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원저작물 중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다14828 판결 등 참조).

음악저작물은 일반적으로 가락(melody), 리듬(rhythm), 화성(harmony)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이 3가지 요소들이 일정한 질서에 따라 선택·배열됨으로써 음악적 구조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리듬, 화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다14828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곡의 창작성 인정 여부¹⁾

앞서 든 증거, 갑 제5, 7호증, 을5, 6,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곡의 A, B구간의 창작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1) K이 가창한 'L'는 1994년경 공표되었고, 피고가 원고 곡의 A구간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의 악보는 아래와 같다.

1) 피고는 원고 곡의 A, B구간에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근거로 원고 곡의 해당 구간이 'L', 'M', 'N', 'O', 'P', 'R', 'Q' 7곡과 유사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곡 중 'R'와 'L'를 제외한 나머지 5곡은 원고 곡보다 후에 공표된 후행저작물이므로 'R'와 'L' 두 곡을 중심으로 원고 곡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한다.



원고 곡 A구간	'L'

원고 곡은 휴지(8분쉼표) 2회 배치로 가락과 리듬이 두 악구로 분절되고 리듬은 16분음표가 포함되어 박 내 세분화가 증가하며, 특히 가락은 도약 상행진행 후 특정 음(솔)의 동음 반복이 전개를 주도한 뒤 순차 하행진행으로 이어지는 흐름이고, 화성은 C-G/B-Am-Em/G 화음 진행으로 전위를 활용해 베이스 성부가 C-B-A-G로 순차 하행 진행하며 분절된 악구 사이의 연결은 베이스의 선적 흐름이 보조한다. 반면 'L'는 휴지 없이 4분음표와 8분음표 중심 리듬이 연속 진행되고, 가락도 순차 상행 진행으로 정점(도) 도달한 뒤 순차 하행진행 하는 단일 흐름이 유지되며, 화성은 C-G-Am-Em 화음 진행의 기본형 제시로 근음 중심의 안정적인 기능 흐름을 뒷받침하는 차이가 있다.

원고 곡 A구간과 'L' 모두 C-G-Am-Em의 화음 진행이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이는 기본 3화음 중심의 근음화성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관용적 표현에 해당하나, 이러한 관용적 표현을 제외하고는 원고 곡이 'L'와 구별되는 독자적 구성이 확인된다.

2) S가 가창한 'R'는 1970년경 공표되었고, 피고가 원고 곡의 B구간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의 악보는 아래와 같다.

원고 곡 B구간	'R'



원고 곡은 휴지(8분음표) 4회 배치로 가락과 리듬이 네 악구로 반복 분절되고, 가락은 순차 진행, 동음 반복, 부분적 도약 진행이 교차하며 전개되고, 리듬은 각 악구에서 8분음표와 16분음표 중심 음가 배열의 틀이 반복되며, 화성은 Em/G, C/E 화음의 전위를 활용해 베이스 성부가 G-F-E-D로 순차 하행진행 하여 분절된 악구 사이의 연결은 베이스의 선적 흐름이 보조한다. 반면 'R'는 휴지 없이 가락과 리듬이 연속 진행되고, 가락은 순차 진행으로 시작한 뒤 도약 진행과 순차 진행이 교차하는 흐름으로 연속되고, 리듬은 16분음표를 포함한 짧은 음가 진행과 비교적 긴 지속 처리가 반복적으로 결합하는 흐름이 유지되며, C-Am-G-F-C 화음 진행으로 근음 중심의 기능 흐름이 전개된다. 이처럼 원고 곡은 'R'와 구별되는 독자적 구성이 확인된다.

다. 원고 곡과 피고 곡의 실질적 유사성 인정 여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곡의 A, B구간의 관용적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 곡의 A, B, C구간과 피고 곡의 A, B, C구간의 일부에서 국소적으로 동일·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 대응구간은 가락의 악구 조직, 리듬의 배열과 단락 경계 설정방식, 화성의 전개 및 종결처리와 베이스 성부처리 등 핵심 결합방식에 차이가 있어 가락, 리듬, 화성의 결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곡과 피고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원고 곡과 피고 곡의 A구간은 가락, 리듬, 화성에서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다.

가) 원고 곡과 피고 곡의 가락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170단 / 210단		180단 / 220단					190단 / 230단					
원고												
피고												
박	제4박	제1박	제2박	제3박	제4박	제1박	제2박	제3박	제4박			

원고 곡은 휴지(8분쉼표) 2회 배치로 가락이 두 악구로 분절되고 각 악구가 휴지로 닫히는 구조가 반복되는 분절 중심 구조인 반면, 피고 곡은 휴지 없이 단일 악구로 연속 진행하면서 동음 반복으로 종결되는 지속 중심 구조이다. 원고 곡과 피고 곡 모두 도입부에서 '미'로 시작하여 '솔'에 도달하는 진행이 있으나, 원고 곡은 '미-미' 동음 반복 후 3도 도약하여 '솔'에 도달하는 반면, 피고 곡은 '미-파-솔'로 경과음을 활용한 순차 진행을 통해 '솔'에 도달하므로 도달방식에 차이가 있다. 또한 원고 곡과 피고 곡 모두 중반부 '라-시-도'의 순차 진행이 확인되나, 원고 곡은 휴지 이후 새 악구의 도입부로 제시되어 '도-라'로 단3도 도약하여 '미'로 종결되는 반면, 피고 곡은 앞선 진행에서 이어지는 연결 흐름으로 나타나 '도-미'로 단6도 도약하여 '도'로 종결되어 진행의 악구 경계에서의 기능과 진행의 방향성 및 해결 방식이 동일하게 작동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 곡과 피고 곡의 리듬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170바 / 210바		180바 / 220바				190바 / 230바						
원고												
피고												
박	제4박	제1박	제2박	제3박	제4박	제1박	제2박	제3박	제4박			

원고 곡은 리듬 진행 중간에 휴지(8분쉼표)가 배치되어 두 개 악구로 분절된 리듬 배열을 보이며 휴지가 리듬 단락의 경계로 기능하는 반면, 피고 곡은 원고 곡에 없는 4분음표, 16+4분음표를 사용하여 리듬을 길게 지속하고 휴지 없이 리듬이 연속 진행되는 양상을 보인다. '8분음표-16분음표-16분음표'나 '8분음표-8분음표-8분음표'처럼 동일 리듬이 있더라도 원고 곡은 휴지로 단락을 닫는 반면, 피고 곡은 16분음표의 연



속과 긴 지속으로 끝내어 그 종결 방식이 다르다.

다) 원고 곡과 피고 곡의 화성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170바다 / 210바다		180바다 / 220바다				190바다 / 230바다				
원고										
피고										
박	제4박	제1박	제2박	제3박	제4박	제1박	제2박	제3박	제4박	

도입부에서 원고 곡은 C 화음을 사용하여 안정적으로 시작하지만 피고 곡은 G7sus4 화음을 사용하여 긴장감을 조성하는 차이가 있고, 중반부에서는 원고 곡과 피고 곡 모두 C-G/B 화음으로 진행되어 Am 화음으로 이어지는 하행진행이 나타나고 이때 베이스가 C-B-A로 순차 하행하여 화음 진행이 동일하나 이러한 진행은 대중음악 전반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관용적 표현에 불과하며, 종결부에서 원고 곡은 Am 화음 이후 종결 화음인 Em/G 화음으로 종결 처리하는 반면 피고 곡은 Am 화음 이후 C/G 화음으로 종결 처리하여 종결부 화성의 운용 방식이 구조적으로 구별된다.

2) 원고 곡과 피고 곡의 B구간은 가락, 리듬, 화성에서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다.

가) 원고 곡과 피고 곡의 가락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190바다 / 170바다				200바다 / 180바다				210바다 / 190바다			
원고												
피고												
박	제4박	제1박	제2박	제3박	제4박	제1박	제2박	제3박	제4박			

원고 곡은 가락 진행 중간에 휴지(8분쉼표) 3회로 악구 경계를 형성하고 종결부에서 휴지(8분쉼표) 1회의 닫히는 방식을 통해 분절 지향이 두드러지는 반면, 피고 곡은 가락 진행 중간에 휴지 없이 반복 전개가 확장되면서 단일 악구로 연속 진행되는 차이가 있다. 원고 곡과 피고 곡 모두 도입부에서 '미-레-도-도'의 진행이 동일하고 이어서 '도-라-솔-솔'의 진행이 박 위치를 달리해 국소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나, 원고 곡은 휴지로 악구 경계가 설정되어 해당 배열이 분절된 단락의 도입부로 기능하지만,



피고 곡은 동음 반복 확장 속에서 휴지 없이 연속 전개되어 제시 위치와 기능이 다르
고 종결부에서도 원고 곡은 '레'로 피고 곡은 '미'로 끝나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 곡과 피고 곡의 리듬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190타디 / 170타디		200타디 / 180타디				210타디 / 190타디				
원고										
피고										
박	제4박	제1박	제2박	제3박	제4박	제1박	제2박	제3박	제4박	

원고 곡은 휴지의 반복 배치로 음가가 짧은 단위로 계속 분절되고, '8분음표-16
분음표-16분음표-8분음표'의 세 번 반복 배열과 '16분음표-16분음표-8분음표-8분음표'
배열이 이어지는데 각 리듬 배열 단위마다 휴지로 닫히는 형태가 반복되는 반면, 피고
곡은 리듬 배열에 휴지가 존재하지 않아 연속되는 양상을 보이며, 리듬의 구성 수치를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8분음표-16분음표-16분음표-8분음표'의 리
듬 배열이 동일하게 나타나더라도 원고 곡은 휴지로 반복 종결되면서 동일한 단락이
네 악구로 분절되고 반복되지만, 피고 곡은 휴지 없이 다양한 음가가 연속적으로 배열
되어 단락 경계가 형성되지 않는 차이가 있다.

다) 원고 곡과 피고 곡의 화성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190타디 / 170타디		200타디 / 180타디				210타디 / 190타디				
원고										
피고										
박	제4박	제1박	제2박	제3박	제4박	제1박	제2박	제3박	제4박	

도입부에서 원고 곡은 Em/G 화음을 사용해 3도 화음 계열로 시작하지만 피고
곡은 C 화음을 사용하여 안정적으로 시작하는 차이가 있고, 중반부에서는 원고 곡과
피고 곡 모두 F에서 C로 진행되는 흐름이 나타나지만 원고 곡은 Em/G-F-C/E 화음
진행으로 순차 하행하는 반면 피고 곡은 C-F-C 화음 진행으로 근음 중심의 배치가 유



지되는 차이가 있으며, 종결부에서 원고 곡은 Dm-G 화음 진행으로 종결을 준비하는 전형적 준비 화음을 선택한 반면 피고 곡은 Am-G 화음 진행으로 종결을 예비하는 차이가 있다.

3) 원고 곡과 피고 곡의 C구간은 가락, 리듬, 화성에서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다.

가) 원고 곡과 피고 곡의 가락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40[디]/260[디]			50[디]/270[디]			60[디]/280[디]			70[디]/290[디]		
원고												
피고												
박	제4박	제1박	제2박	제3박	제4박	제1박	제2박	제3박	제4박	제1박	제2박	제3박

원고 곡은 휴지(8분쉼표) 2회 배치로 악구 경계를 형성하고 종결부에서 휴지(8분쉼표) 1회의 닫히는 방식을 통해 가락이 세 개의 악구로 분절되고 각 악구가 휴지로 닫히는 분절 중심의 구조인 반면, 피고 곡은 휴지 없이 단일 악구로 연속 진행하면서 동음 반복과 연결 진행으로 단락 경계가 분절되지 않는 연속 중심의 구조이다. 도입부에서 원고 곡의 '도-레-미-레'와 피고 곡의 '도-미-레'가 '도'를 거쳐 '레'에 이르는 진행에 있어 유사한 인상을 줄 수 있으나 원고 곡은 순차 상행진행 뒤 순차 하행진행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피고 곡은 도약 상행진행 뒤 순차 하행진행하여 그 진행방식에 차이가 있다. 중반부에서도 '미-솔-라-솔-미-미'가 공통으로 나타나지만 원고 곡은 휴지로 분절되어 있는 반면 피고 곡은 휴지 없이 앞뒤 진행과 연속되어 있어 악구 경계와 전개 기능이 상이하다.

나) 원고 곡과 피고 곡의 리듬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40[디]/260[디]				50[디]/270[디]				60[디] / 280[디]				70[디] / 290[디]			
원고																
피고																
박	제4박	제1박	제2박	제3박	제4박	제1박	제2박	제3박	제4박	제1박	제2박	제3박				

원고 곡은 '8분음표-8분음표-4분음표-8분음표-8분음표-8분음표-휴지(8분쉼표)'



의 동일 배열이 3회 반복되고 매 반복이 휴지(8분음표)로 닫히면서 휴지가 리듬 단락의 경계로 기능하는 분절 중심의 리듬조직을 보이는 반면 피고 곡은 휴지가 존재하지 않아 악구가 분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간을 처리하여 리듬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속조직되는 차이가 있다. 이처럼 원고 곡은 동일 리듬 패턴이 반복되더라도 매번 휴지로 닫히는 종결 방식이 고정되어 있지만 피고 곡은 마지막에 '4분음표-4분음표-4분음표' 배열로 지속을 강화하여 종결하므로 원고 곡과 피고 곡에 동일 리듬 배열이 확인되더라도 전체 리듬의 조직 방식은 다르다.

다) 원고 곡과 피고 곡의 화성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40마디 / 260마디				50마디 / 270마디				60마디 / 280마디				70마디 / 290마디			
원고																
피고																
박	제4박	제1박	제2박	제3박	제4박	제1박	제2박	제3박	제4박	제1박	제2박	제3박	제4박	제1박	제2박	제3박

도입부에서 원고 곡은 G7sus4 화음으로 긴장감을 형성한뒤 C 화음으로 해결하지만 피고 곡은 C 화음으로 조성의 중심에서 시작하는 차이가 있고, 중반부에서는 원고 곡은 C 화음 이후 G/B 화음으로 전위를 사용해 진행하지만 피고 곡은 Am 화음 이후 G 화음으로 진행하여 화음 기능과 진행의 차이가 있으며, 종결부에서도 원고 곡은 F 화음 이후 C/E 화음으로 전위한 으뜸화음으로 마무리되지만 피고 곡은 Dm 화음 이후 G7sus4 화음으로 종결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끝나 그 운용 방식에 차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6-29

재판장 판사 조희찬

판사 김현호

판사 장 영